탄 원 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6 노 23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수　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 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께.

1. 탄원의 취지

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항소심에 관하여 공개된 선고 내용과 관련 증언을 살펴본 시민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그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시되 실제 지시와 현장 판단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형의 정도를 살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2026 년 9 월 21 일 제 1 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 년을 선고하였습니다.[1][2] 이 사건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능과 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판단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 전체의 중대성과 개별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역할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 이행된 지시, 이행되지 않은 지시, 부대원들의 독립적인 판단, 물리력 행사 여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추정하여 선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불리하게 평가한 사정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 결과와 제한적으로 인정된 유리한 정상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 원심이 인정한 중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선고 재구성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2024 년 12 월 2 일 병력 운용에 관한 메모를 작성한 사정, 계엄 선포 이전 부대 소집과 이후 국회 병력 투입에 관여한 사정,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사정 등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시를 부인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1] 저는 이러한 불리한 판단을 탄원서에서 생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덮고자 하지 않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명령의 내용뿐 아니라 병력이 국회 현장에 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까지 무겁게 평가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 준비 행위, 국회 현장의 실제 지시, 장비 운용에 관한 별도의 판단 및 사후 진술은 증거의 대상과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밝히는 작업은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전 계획과 실제 실행의 범위를 구별해 주십시오

2024 년 12 월 2 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는 병력 소집과 운용, 통신 및 장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백인의 2025 년 9 월 2 일 증언을 정리한 자료에서도 그 문서의 성격과 실제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3] 원심이 이를 사전 준비의 중요한 자료로 본 점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문서의 모든 항목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각 조치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별개의 사실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비를 준비하라는 계획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투입이 없었던 이유가 상급자의 중단 지시인지, 현장 간부의 독립적인 판단인지, 물리적 제약 때문인지에 따라 개인별 양형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사전 관여를 가볍게 보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 결과와 미실행의 원인을 각각 증거에 따라 구별하고, 범행 수단과 결과를 평가하는 데 적절히 반영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4. 비무장 지시와 직접적 물리력 행사 부재의 양형상 위치

원심은 피고인이 국회에 투입되는 수방사 병력에 비무장을 지시한 점과 수방사 병력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을, 내란죄가 위험범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공개된 선고 재구성에 나타납니다.[1] 이 판단은 국회에 군 병력이 출동했다는 사실의 위법성이나 헌법적 위험을 없애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허용된 무력의 수준과 결과는 형법 제 51 조가 고려하도록 하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2] 비무장 조치가 실제 어느 부대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무기 휴대와 탄약 사용에 대한 지시가 어떠했는지는 피고인의 개인별 지휘 행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고인의 사후 진술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하지만, 원심 자체가 일정한 비무장 조치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는 점은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탄원에서 요청하는 것은 같은 사정을 두 번 가중하여 참작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의 제한적 유리한 판단이 전체 형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피고인의 무장 관련 지시와 수방사 병력의 실제 행동이 불리한 사정과 함께 균형 있게 평가되었는지를 항소심에서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지휘관이나 현장 부대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위험 감소 조치를 피고인 개인의 공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장갑차 관련 증언: 위병소 배치 지시와 국회 방향 미출동을 구별해 주십시오

장갑차와 관련된 공개자료에는 서로 다른 장소와 목적의 조치가 등장합니다.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장갑차 출동을 막았다”는 하나의 사실로 요약하면 실제 지휘 관계와 현장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경위는 조백인과 오상배의 공개 법정 방청기록 및 피고인 측 진술을 구별하여 살펴본 것입니다.[3][4][5]

첫째, 국회 방향 장갑차 미출동의 최초 판단입니다. 조백인의 2025 년 9 월 2 일 증언을 정리한 군인권센터 기록에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인 수호신 TF 가 출동할 때 장갑차가 통상 동원되는 장비이지만, 조백인과 김문상이 협의하여 장갑차는 출동시키지 않기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3] 따라서 현장 간부들이 먼저 내린 미출동 판단을 피고인의 최초 지시로 바꾸어 적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방사령부 위병소에 대한 별도의 배치 지시입니다. 같은 방청기록에는 피고인이 조백인에게 장갑차로 수방사령부 위병소를 막아 두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나, 조백인은 배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3] 이 지시는 국회 방향 장갑차 출동과 대상 장소 및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피고인이 실제로 내린 장갑차 관련 지시로서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 탄원은 이를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누락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현장 발언과 사후 인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2026 년 3 월 23 일 오상배 증언을 정리한 기록에는 장갑차가 국회 현장에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관련 발언이 제시되고, 장갑차는 그곳에 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기억한다는 오상배의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상배는 그 발언이 누구의 선행 건의에 따른 것인지 또는 최초 미출동 결정이 어떤 순서로 내려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4]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변론상 자기 진술 역시 최초 판단의 주체와 실행 경위를 독립적으로 확정하는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5]

이처럼 ① 국회 방향 미출동의 선행 판단, ② 위병소 배치 지시와 그 미이행, ③ 피고인의 현장 발언·인식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장갑차가 국회 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않았다는 결과에는 현장 간부들의 판단이 기여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나 후속 대응에 위험을 줄이려는 요소가 있었는지는 정식 증인신문조서와 관련 지시·보고 기록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6. 국회의원 관련 지시와 사후 진술의 신빙성

원심의 공개 선고 재구성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부하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그 전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1] 조성현의 헌법재판소 증언 관련 보도와 피고인의 후속 진술 관련 보도에도 서로 다른 취지의 진술이 등장합니다.[6][7] 이러한 진술 충돌을 단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표현으로 모두 해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한 법률적 다툼과 사실에 반하는 책임 전가는 구체적인 발언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보고 시점, 실제 전달된 언어, 진술의 일관성과 다른 관련자 증언이 서로 어떻게 부합하는지 정확히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판결문과 공판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원심의 증거 판단을 이미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7. 개인별 정상자료는 확인된 내용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2023 년 11 월 군 인사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장으로 진급하여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임되었습니다.[8] 그 경력은 장기간 군에서 근무한 이력인 동시에 높은 지휘 책임을 부담한 사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위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군 공적이나 표창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도 자료 없는 미담을 탄원의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2024 년 12 월 16 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 사실은 공개 보도로 확인됩니다.[9] 다만 짧은 사과 발언을 범죄사실 전부의 인정이나 충분한 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 년 12 월 국방부가 피고인을 파면한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10] 공직 경력, 사후 발언과 징계는 각각 본래의 의미에 맞게 고려되어야 하며, 어느 한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에 대한 태도를 단정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형법 제 51 조에 따른 책임과 형의 균형

형법 제 51 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12] 원심이 인정한 사전 준비, 국회 병력 투입, 국회의원 관련 지시와 사후 태도를 무겁게 고려할 이유가 있다는 점은 존중합니다. 그와 동시에 실제로 인정된 비무장 지시, 수방사 병력의 직접적 물리력 행사 부재, 장갑차 운용 과정에서 구별되는 각 주체의 판단 역시 사실에 맞는 무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 년 10 월 23 일 공개된 재판 진행자료에서는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와 2026 노 2322 사건의 진행이 확인됩니다.[11] 다만 양측의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쪽의 항소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률적 쟁점의 결론을 대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형의 정도를 검토할 때 인정된 개별 사실들이 빠짐없이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 어

존경하는 재판부 판사님, 피고인이 지휘관으로서 부담하는 중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하여 주시되, 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지시와 실행 결과를 구별하여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미 원심이 제한적으로 참작한 비무장 조치의 의미와 장갑차 미출동에 관한 서로 다른 판단 주체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고, 형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적정하고 가능한 한 관대한 형을 정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 소: _____

생년월일: _____

연 락 처: _____

별첨 | 출처와 검증 범위

[01] 뉴스하다, 「법원은 왜 박안수 60%, 여인형 40% 형량 깎아줬나」
선고 현장 재구성 / 언론 | 2026.09.22 | 이진우 징역 15 년, 불리한 판단, 비무장 조치의 제한적 참작
https://newshada.org/6830/

[02] 한겨레, 「'내란 가담' 혐의 여인형 징역 18 년, 이진우 징역 15 년…1 심 선고」
언론 / 선고 교차확인 | 2026.09.21 | 1 심 선고 결과와 시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848.html

[03] 군인권센터 내란대장경, 「2025.09.02 이진우 공판 (증인: 조백인)」
시민단체 법정 방청기록 | 2025.09.02 | 국회 방향 장갑차 미출동의 선행 판단, 수방사 위병소 배치 지시의 미이행
https://mhrk.org/106/?bmode=view&idx=169498201

[04] 군인권센터 내란대장경, 「2026.03.23 이진우 공판 (증인: 오상배)」
시민단체 법정 방청기록 | 2026.03.23 | 피고인 관련 장갑차 발언과 오상배가 모른다고 답한 최초 결정 경위
https://mhrk.org/106/?bmode=view&idx=170614429

[05]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동영상 공개 페이지
공식 변론영상 안내 | 2025.02.04 변론 | 피고인 측 진술이 나타나는 별도 절차의 자료; 본인 진술은 독립 입증과 구별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View.do?bcIdx=2453190

[06] 연합뉴스, 조성현 전 제 1 경비단장 헌법재판소 증언 보도
언론 / 법정 증언 취재 | 2025.02.13 | 국회의원 관련 지시 전달을 둘러싼 증언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3141851004

[07] 뉴스핌, 이진우의 후속 법정 진술 관련 보도
언론 / 법정 취재 | 2025.12.15 | 피고인 진술 변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15001094

별첨 | 개인별 자료 · 법령 · 확인 한계

[08] 연합뉴스, 「합참차장에 황유성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에 곽종근」
군 인사 보도 | 2023.11.06 | 중장 진급 및 수도방위사령관 보직
https://www.yna.co.kr/amp/view/AKR20231106081900504

[09] 연합뉴스, 이진우의 구속 전 심문 출석 당시 사과 발언
언론 / 현장 취재 | 2024.12.16 | 대국민 사과 발언. 범행 인정 및 완전한 반성으로 확대하지 않음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104100504

[10] 중앙일보,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언론 / 국방부 브리핑 인용 | 2025.12.29 | 징계·파면 사실. 형사 양형과는 구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604

[11] 참여연대 사건 진행기록, 12·3 관련 수사와 재판
시민단체 사건 진행정보 | 2026.10.23 확인 | 2026 노 2322, 서울고법 형사 12-1 부, 쌍방 항소
https://watch.peoplepower21.org/WatchPro/case/33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 51 조(양형의 조건)
공식 현행법령 | 2026.10.02 시행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011095